

# 감 사 보 고 서

- 임직원 급여 및 복리후생비 등 지급실태 -

2020. 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감사실

# [ 목 차 ]

##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 배경 및 목적 .....	01
2. 감사범위 및 중점사항 .....	01
3. 감사인원 및 기간 .....	01
4. 감사결과 처리 .....	02

## II. 감사결과

1. 감사결과 총평 .....	03
2. 지적사항 총괄 .....	05
3. 분야별 지적사항(요약) .....	06

## III.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	08
1-1. 신분상 조치인원 명세 .....	08
2. 현지조치사항 일람표 .....	08

- 붙임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 감사결과 증거서류 목록

# I. 감사실시 개요

---

## 1. 감사 배경 및 목적

- 임직원 급여 지급항목 및 지급기준이 규정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예산낭비 등 사전 예방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함
- 임직원들에 대한 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의 지급내역 및 지급의 적정성 등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방만경영 등을 예방하고자 함

## 2. 감사범위 및 중점사항

- 감사범위 : 2018년~2019년 2년간의 급여 및 가족수당 등 전반
- 급여 등 지급대상자들에 대한 관리 및 지급의 적정성 여부
  - 퇴직자 처리 여부 및 휴직자들에 대한 급여 산정의 적정성
  - 가족수당 등 산정 시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및 부적격자의 인정 여부 등
- 자녀학비보조금(학자금) 지급에 따른 관리 및 지급의 적정성 여부
  - 대상자 중복지원 또는 면제 대상자에 대한 지급 여부 등

## 3. 감사인원 및 기간

- 감사인원 : 2명
  - ★★★ : 감사총괄 등
  - ♪♪♪ : 급여 및 복리후생비 등 관리 운영 적정성 검토
- 감사기간
  - 사전준비 : 2020.3.16.(월) ~ 4.10.(금)
  - 예비조사 : 2020.4.13.(월) ~ 4.29.(목)

- 실지감사 : 2020.5.11.(월) ~ 6.15.(월) / 30일간(공휴일 제외)
  - ※ 과오지급 내역 재검증 : 2020.6.22.(월) ~ 6.26.(금)
- 감사결과 보고 : 2020.6.29.(월) ~ 7.17.(금)
  - ※ (감사계획 변경) 당초 실무 감사관이었던 △△△차장이 승진에 따른 인사발령('20.4.6.)으로 감사를 일시 중단하였으며, 업무 인수인계 등으로 지연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 실지감사를 1개월 연기하여 추진함.

#### 4. 감사결과 처리

- 실지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2020.6.19. 감사실장 ★★★, %%%부장 ○○○, ■■■■■본부장 ◆◆◆, 이상 3명은 감사마감회의를 실시하여 주요 지적사항 및 향후 처리대책에 대해 의견을 논의하였으며,
- 담당부서(&&&부)에서 가족수당 과오지급 내역에 대해 상반된 해석을 제시하고 재검토를 요청하여, 담당부서와 2차로 과오지급 내역을 재검증 후 확정하였다.
- 감사마감회의에서 제시된 의견과 2차로 확인된 가족수당 과오지급내역 등을 토대로 지적사항에 대해 2020.7.31. 상임감사 ●●●과 감사자문위원 ■■■■■, ○○○, ▨▨▨, □□□ 4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결과에 대한 심의회의를 통해 처분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를 거쳐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 Ⅱ. 감사결과

---

### 1. 감사결과 총평

- 본 감사는 2018.1.1.부터 2019.12.31.까지 임직원들에 대한 급여 및 각종 수당 등의 지급기준들이 관련규정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예산낭비 등 예방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실시하였다.
  - 급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가 되어야 함에도 가족수당 지급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발견 되었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는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을 준수하여 매년 임직원의 급여지급 계획을 수립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수규정』 제21조(가족수당) 등에 근거하여 2018년 직원 148명에게 총 110,602,667원을, 2019년도 직원 190명에게 133,712,000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하였다.
  - 그런데 직원들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일부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고, 업무착오 등으로 일부대상자들에게 과오 지급되는 등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 부양가족 확인서류 미확인에 따른 예산집행의 적정성, 투명성 훼손 우려
- 『보수규정』 제21조 제6항에 의거 가족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신고서’를, 사전공지에 따라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이는 부양가족 대상자 등 여부를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 지급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인데, 관련서류 제출 없이(지출증빙 부재) 지급된 경우가 총 11건(부양가족신고서 누락 5건, 증빙자료 누락 6건) 발생함

- 『보수규정』 제21조 제5항 배우자 가족수당 중복 지급불가 규정 미이행
  - 예술위 직원 중 배우자 한명이 공무원(지방공무원 포함)이거나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의 해당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직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함
  - 해당규정은 2018.8.9. 신설되었으나, 점검결과 해당부서에서는 이를 확인하고 있지 않고 있었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 또한 부재한 상황으로 예술위 직원의 배우자 중 일부는 위 규정의 대상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 조속히 실행방안 마련 필요
  
- 급여 등 관리업무의 정확성·효율성 향상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시급
  - 최근 몇 년간 기관 정원의 증가로 인건비 지급대상자가 대폭 증가 함
  - 이에 급여 및 수당 체계가 복잡해지고, 매달 급여일에 맞추어 다수인원의 변동에 따른 인건비 산출·확정·재검토 등을 수행함에 있어 업무담당자의 업무부담이 상당함을 고려하여 관리업무 효율성 및 정확성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 개선 방안 시급
  
- 급여 전반에 대한 명확한 산출방법(기준), 산출산식 등 기술된 ‘매뉴얼’ 마련
  - 배우자 가족수당 중복 지급불가, 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가족수당 지급대상기준 등에 있어서 해석 오류에 따른 잘못된 공지 및 담당자의 착오 등에 따른 수당 과오지급이 발생하였음
  - 급여 및 각종 수당의 산출시 적용대상자, 적용시점 등이 상이하거나 관련법령 및 규정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이견 및 착오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바 급여를 포함하여 각종 수당에 대한 산출방식 및 기준, 산출산식 등이 명확히 기술된 해설서 또는 관리지침서 형태의 매뉴얼 마련 필요

- 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에 대한 신청 및 증빙에 대한 의무주체는 해당 근로자이며 담당부서는 이를 확인하는 등 관리주체로 관련 매뉴얼 및 공지를 정확히 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정확 또는 부당신청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가족수당 지급기준 ‘회계연도’ 적용의 타당성 재검토 필요

- 업무 효율성 및 연차휴가와 같은 다른 규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의 가족수당의 발생 및 소멸시점을 ‘회계연도’ 로 적용하고 있음
-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면, 『보수규정』에 따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월분까지 지급’ 하는 방식과 비교하였을 때 초과지급(예산낭비) 또는 미지급(형평성 문제) 대상자가 발생 가능함
- 또한 직계비속, 직계존속에 대한 회계연도 적용 방식은 장기간의 가족수당 집행내역에 대한 관리 및 확인이 어려운 현재의 업무행태를 고려했을 때, 부양가족의 출생 월 및 사망 월 등에 따라 각 대상별로 최대 11개월분에 대한 지급액 차이가 발생함으로써 집행에 왜곡의 요인이 있고 대상자들에 대한 형평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

□ 아울러 2018년~2019년 가족수당 지급내역 중 수당 산정 오류 및 업무담당자의 착오 등으로 초과 지급 2건 총 750,000원은 회수, 미지급 34건 총 7,202,667원 환급 필요

## 2.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원, 명)

합계			변상	징계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모범 사례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소계	환급	회수						
4건	3명	7,952,667	-	-	7,952,667 (1건)	7,202,667	750,000	3명 (1건)	1건	1건	-	-	-

### 3. 분야별 지적사항(요약)

#### □ 가족수당 관련 행정적 오류 및 문제점

##### ① 배우자 가족수당 중복 지급불가 미확인 및 부정확한 공지

- 『보수규정』 제21조 5항에 따르면, 부부 중 1명은 직원이고 배우자가 공무원이거나,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직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담당부서는 위 규정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사내에 잘못된 내용-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가 근무지 등의 문제로 부득이하게 근무행태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각각의 부양가족으로 세대가 구성되어 있다면 각자 가족수당 수령이 가능-으로 공지하고 있었음

##### ② 규정과 다른 회계연도 적용 가족수당 업무처리 부적절

- 가족수당과 관련해서는 회계연도 준용에 대한 사항이 명문화 되어 있지 않은데도,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의 가족수당 산정 시 임의적인 회계연도를 단위기준으로 설정하여 집행함

##### ③ 부양가족신청서 등 제출자료 미확인 업무처리 부적절

- 담당부서는 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직원에게서 ‘부양가족신고서’와 함께 부양가족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을 해야 함에도 일부직원에게 임의방법(구두통보, 전화, e-mail 등)으로 확인 후 가족수당을 지급함

□ 가족수당 산정오류 및 착오에 의한 과오 지급

④ 가족수당 지급대상자 착오에 따른 가족수당 과지급

- ‘수습 중에 있는 직원’ 은 『보수규정』 제10조에 따라, ‘해외대학원 위탁교육자’ 는 예술위 <인사위원회 심의결정>에 따라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됴에도 가족수당 2건 750,000원을 부당 지급함

⑤ 업무담당자의 착오에 의한 가족수당 미지급

- 『보수규정』 제21조 제6항, 제7항 및 담당부서의 사전 공지에 따라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해서 지급되었어야 함에도 ㉠ 업무담당자의 가족수당 책정 착오로 가족수당 7건 1,200,000원을 미지급하였고, ㉡ 가족수당 지급사유 발생 시점부터 수당액을 산정하지 않거나 누락하는 등 착오로 가족수당 10건 686,667원을 미지급함

⑥ 임금협약에 따른 가족수당 소급분 미지급

- 노사 간의 임금협약(‘18.8.8.)에 따라, 개정된 『보수규정(‘18.8.9.)』 을 2018.1.1.부터 소급적용하였을 때 발생하는 8개월의 가족수당 증액분을 대상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일부 사항이 누락되어 가족수당 11건 1,800,000원을 미지급함

⑦ 직계비속 변경기준 적용 오류에 따른 가족수당 미지급

- 『보수규정(‘18.8.9.)』 개정으로 부양가족의 직계비속 지급기준이 ‘18세 미만’ 에서 ‘19세 미만’ 으로 상향되었으나 지급대상자 적용 연도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가족수당 7건 3,516,000원을 미지급함

### Ⅲ.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일련 번호	감사대상기관 (관계기관/부서)	건 명	처 분 요 구			조치 기한	감사자
			처분 종류	재정상 조치금액	신분상 조치인원		
1	&&&&부	가족수당 과오 지급 및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요구	-	3	2020.9월 말	★★★ ♫♫♫
2			시정(환급)	7,202,667	-	2020.10월 말	
3			시정(회수)	750,000	-	2020.10월 말	
4			개선요구	-	-	2020.10월 말	
5			권고	-	-	2020.10월 말	

일련 번호	제 목 (지적사항)	처분종류	처분 요구사항
1	가족수당 과오 지급 및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요구	○ 가족수당 업무처리 및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관련자 3명에게 ‘주의’ 촉구
		시정요구 (환급)	○ 『보수규정』 미준수 및 착오 등에 따른 가족수당 미지급금 7,202,667원 대상자에게 지급 처리
		시정요구 (회수)	○ 『보수규정』 미준수 및 착오 등에 따른 가족수당 과지급된 750,000원 대상자에게서 회수 처리
		개선요구	○ 가족수당 과오지급 및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내용을 재검토 하여 오류를 수정하시고, 오류/이견이 발생되지 않도록 별도의 ‘해설서’ 등 방안을 마련
		권고	○ 급여 등 관리가 전산화 되어 있지 않아 과오지급 등이 발생 함에 따라 ‘전산시스템’ 도입 등 적극적인 방안 검토

#### 1-1. 신분상 조치인원 명세

제목	처 분 내 역				
	조치양정	소속	직위	직급	성명
가족수당 과오 지급 및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경고)	♫♫♫♫본부			
	주의(경고)	&&&&부			
	주의(훈계)	&&&&부			

#### 2. 현지조치사항 일람표 : 해당사항 없음

#### [별첨]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 증거서류 목록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임감사 시정(환급·회수) · 주의 · 개선 · 권고

제 목 가족수당 과오 지급 및 업무처리 등 부적정  
소 관 부 서 &&&&부 (舊 @@@@부 및 %%%%부)  
조 치 부 서 &&&&부  
내 용

## 1. 업무 개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는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을 준수하여 매년 임직원의 급여 지급계획을 수립하고 예술위의 『보수규정』 제21조(가족수당)에 근거하여 직원들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담당부서는 매년 1월 경, 가족수당 지원대상, 지원내용, 유의사항이 명시된 ‘안내서’를 정기적으로 공지하고 있으며 가족수당을 수급 받고자 하는 직원은 『보수규정』 제21조(가족수당) 제6항 및 사전 공지된 방법에 따라 ‘부양가족신고서’와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직원들로부터 제출받은 ‘부양가족신고서’ 및 ‘증빙자료’를 근거로 담당부서는 해당직원들의 가족수당액을 산정 후 매월(21일)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매 회계연도 1월 신고 분은 2월부터 적용하여 지급하였고, 연도 중반 접수되는 가족수당 신청은 담당자 검토를 거쳐 상급자에게 확인 및 지시를 받아 처리하고 있다.

한편 예술위는 직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의 일환으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2018.8.9.자로 『보수규정』을 개정하였으며, 노사 간에 체결된 『임금협약(2018.8.8.)』 제5조(적용기간) 및 제11조(기타 수당) 제3항에 따라

개정 된 가족수당 지급기준의 변경사항을 2018.1.1.부터 소급적용하였을 때 발생하는 8개월의 가족수당 증액분을 9월에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지급 된 가족수당 현황은 [표1]과 같다.

[표 1] 2018 ~ 2019 2년간 가족수당 집행개요

구분	지급인원	총지급액	담당부서	비고
2019년	190명	133,712,000원	&&&&부('19.3월 ~ '19.12월) %%%부('18.4월 ~ '19.2월) @@@@부('18.1월 ~ '18.3월)	조직 개편
2018년	148명	110,602,667원		

##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가. '배우자 가족수당' 중복 지급불가 미확인 및 부정확한 공지

2018.8.9.자로 개정된 『보수규정』 제21조 제5항에 따르면, '부부 중 1명은 직원이고 배우자가 공무원(「지방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을 포함한다.)이거나,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다음 각 호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직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보수규정』 개정 후 2018.8.14.자 사내 공지사항 <[FAQ] 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가족수당 지원신청안내 - 2018년 가족수당 지급 관련 자주 묻는 문의사항 및 답변>과 <2019년 가족수당 신청안내(%%%%부-776(2019.01.17.))> 내용을 보면 '배우자가 공무원

#### 1) 「보수규정」 제21조 제5항 각호 (2018.8.9. 신설)

1.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2.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5.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또는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가 근무지 등의 문제로 부득이하게 근무행태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각각의 부양가족으로 세대가 구성되어 있다면 각자 가족수당 수령이 가능.' 이라고 공지하였는데, 이는 『보수규정』 제21조 제5항 및 해당규정 조문의 근거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4항 및 제5항에 반하는 내용으로 규정 개정에 따라 2018년 9월부터는 수정 공지되어야 함에도 이를 바로잡지 아니하였다.

개정된 보수규정의 관련 조문	2018년~2019년 안내사항
<p>○ 부부 중 1명은 직원이고 배우자가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및 그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을 포함한다.)이거나,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직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p>○ 배우자가 공무원 또는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b>※ 단, 부부가 근무지 등의 문제로 부득이하게 근무행태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각각의 부양가족으로 세대가 구성되어 있다면 각자 가족수당 수령 가능</b></p>

#### 나. 부양가족신청서 및 제출자료 미확인 등 부적절

예술위 『보수규정』 제21조 제6항에 따라 ‘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직원은 매년 부양가족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담당부서는 ‘부양가족신고서’와 함께 부양가족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받아 부양가족 대상자 여부 확인 및 가족수당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8년~2019년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일부직원의 경우 ‘부양가족신고서’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이전에 제출된 자료를 통해 인지 또는 이미 부양가족 여부를 알고 있다는 사유로 부양가족 여부를 임의의 방법(구두통보, 전화, e-mail 등)으로 확인 후

[표2]과 같이 지급하였다.

[표 2] 2018년~2019년 제출서류 누락에 의한 가족수당 지급내역

연도	사번	성명	지급액	제출서류 미확인 내역		
				누락서류	해당금액	지급내용
2018			200,000	증빙자료	200,000	· 배우자 (5개월)
			500,000	부양가족신고서	20,000	· 모친 (1개월)
			972,000	증빙자료	478,667	· 부친, 모친 (12개월)
			260,000	부양가족신고서	220,000	· 배우자, 첫째자녀, 둘째자녀 (2개월)
			90,000	부양가족신고서	90,000	· '17년 지급내역을 근거로 지급
			1,360,000	증빙자료	160,000	· 부친, 모친 (4개월)
			70,000	부양가족신고서	70,000	· '17년 지급내역을 근거로 지급
			400,000	담당자 분실	400,000	· 배우자 (10개월)
2019			576,000	증빙자료	576,000	· 부친 (5개월) / 모친, 첫째자녀 (12개월)
			480,000	부양가족신고서	480,000	· 사내 배우자 휴직에 따른 승계 (4개월)
			240,000	증빙자료	240,000	· 모친 (12개월)
합계			5,148,000	-	2,934,667	-

#### 다. 가족수당 지급대상자 착오에 따른 가족수당 과지급

예술위 『보수규정』 제10조(수습기간 중의 보수)에서는 ‘인사관리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습 중에 있는 직원에게는 기본연봉과 종합평가성과연봉 100%를 지급하고 기타 수당 및 경영평가성과연봉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외대학원 위탁교육자에 대한 급여는 예술위 ‘인사위원회 심의결정’에 따라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1(내부평가에 따른 성과급)을 제외한 기타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업무담당자의 착오로 [표3]과 같이 가족수당이 잘못 지급되었다.

[표 3] 업무담당자의 착오에 의한 가족수당 과지급 내역

연도	사번	성명	총지급액	가족수당 착오 지급내역	
				착오 지급액	착오 사유
2018			390,000	30,000	수습기간 1개월분 지급
			720,000	720,000	해외대학원 위탁교육기간 8개월분 지급
합계			1,110,000	750,000	

## 라. 업무담당자의 착오에 의한 가족수당 미지급

예술휘 『보수규정』 제21조 제7항에는 ‘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 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월분까지 지급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 가족수당 신청안내(@@@부-511(2018.01.17.)> 및 <2019년 가족수당 신청안내(%%%부-776)> 등 공지내용에 따르면 ‘가족수당 지급시기는 매월 급여지급일 21일로 정하고 있으며, 급여일을 기준으로 이전 신고의 경우에는 그 월에 지급하고 이후 신고는 다음 월 급여지급일에 수당을 반영하여 지급’하며, ‘가족수당 사유가 발생한 달에 부양가족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해서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업무담당자들의 착오로 가족수당 지급사유 발생시점부터 수당액을 산정하지 않거나 누락하는 등 착오로 [표4]와 같이, 가족수당액 산정을 잘못하여 [표5]와 같이 일부 지급대상자들의 가족수당을 미지급하였다.

[표 4] 지급사유 발생시점 임의적용에 따른 미지급 내역

연도	사번	성명	미지급액	지급사유 발생시점	신청서 제출일	미지급 내용
2019			40,000	6.13 (신분변경)	미제출	· 사무처장 직무대행 면직에 따른 직원신분 변경 · 가족수당 1개월(6월) 소급분 미지급
			26,667	8.1 (복직)	10.1	· 가족수당 1개월분(8월) 미지급
			20,000	1.12 (결혼)	1.29	· 가족수당 1월 소급분 일부 미지급(20,000원)
			140,000	3.20 (복직)	3.29	· 가족수당 3월 소급분 미지급 (1개월)
			20,000	7.23 (복직)	8.5	· 가족수당 7월 소급분 미지급 (1개월)
			60,000	5.21 (복직)	5.24	· 가족수당 5월 소급분 미지급 (1개월)
			60,000	5.31 (출산)	6월 중	· 가족수당 둘째자녀 5월 소급분 미지급 (1개월)
			20,000	4.20 출산	5월 중	· 가족수당 첫째자녀 4월 소급분 미지급 (1개월)
			140,000	2.28 (복직)	3.15	· 가족수당 2월 소급분 미지급 (1개월)
			160,000	10.28 (입사)	11.19	· 가족수당 10월, 11월 소급분 미지급 (2개월)
합계		686,667				

[표 5] 가족수당액 산정 착오에 의한 미지급 내역

연도	사번	성명	지급액	미지급액	미지급 내용
2018			1,040,000	160,000	· 모친(58년생) 미지급 (8개월)
			320,000	160,000	· 모친(58년생) 미지급 (8개월)
			1,040,000	160,000	· 모친(58년생) 미지급 (8개월)
2019			960,000	240,000	· 모친(59년생) 미지급 (12개월)
			720,000	360,000	· 둘째 자녀에 대한 수당계산착오 미지급
			200,000	120,000	· 모친(59년생) 미지급 (6개월)
합계			4,280,000	1,200,000	

#### 마. 임금협약에 따른 가족수당 소급분 미지급

예술위는 노사 간의 임금협약('18.8.8.)에 의거하여 2018.8.9.자로 개정된 『보수규정』의 가족수당 지급기준을 2018.1.1.자부터 소급적용하였을 때 발생하는 동년 8월까지의 8개월치 증액분<sup>2)</sup>을 대상자들에게 추가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담당부서는 사내 게시 및 안내메일('18.8.14.) 등을 통해 개정사항을 공지하면서 2018.9.7.까지 '부양가족신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 후 9월 가족수당 지급 시 소급액을 일괄 지급하였다.

'소급적용'이라 함은 특정한 날을 기준으로 그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으로 업무처리에 있어서는 새롭게 접수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소급시점인 2018.1.1.자 부터의 상태를 파악하고 이에 근거로 하여 가족수당이 지급되었어야 한다.

#### 2) 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가족수당 지급기준 소급적용 시 증액분 발생 사항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①직원 당 부양가족 수	- 1인당 4인 이내	- 1인당 4인 이내 - 자녀의 경우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
②부양가족별 월 지급액	- 배우자 : 30,000원 - 기타 부양가족 : 20,000원	- 배우자 : 40,000원 -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 20,000원 - 첫째 자녀 : 20,000원 - 둘째 자녀 : 60,000원 - 셋째 이후 자녀 : 100,000원
③직계비속 연령기준	- 18세 미만	- 19세 미만

그런데 개정된 『보수규정』에 따라 가족수당 지급기준을 소급 적용하면서, 변경 전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였던 1월부터 8월까지의 가족수당 산출내역에 기초하여 추가되는 소급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사항이 누락되어 [표6]과 같이 가족수당 소급액을 미지급하였다.

[표 6] '18년 임금협약에 따른 가족수당 소급분 중 미지급 내역

사번	성명	지급액	미지급액	소급분 미지급 내용
		1,266,667	320,000	· 둘째자녀 8개월분(1월~8월) 소급액 누락
		1,400,000	40,000	· 둘째자녀 1개월분(5월) 소급액 누락
		1,400,000	40,000	· 둘째자녀 1개월분(3월) 소급액 누락
		1,760,000	160,000	· 모친 8개월분(1월~8월) 소급액 누락 ※ 기존 집행내역(4인)에 대해서만 소급 진행
		1,280,000	640,000	· 셋째자녀 8개월분(1월~8월) 소급액 누락
		820,000	100,000	· 가족수당 1개월분(5월) 소급액 누락
		1,180,000	280,000	· 둘째자녀 7개월분(1월~7월) 소급액 누락
		220,000	20,000	· 부친 1개월분(1월) 소급액 누락 ※ 관행에 따라 이전년도 집행내역에 근거 지급
		940,000	20,000	· 모친 1개월분(1월) 소급액 누락 ※ 관행에 따라 이전년도 집행내역에 근거 지급
		1,760,000	160,000	· 모친 8개월분(1월~8월) 소급액 누락 ※ 기존 집행내역(4인)에 대해서만 소급 진행
		220,000	20,000	· 부친 1개월분(1월) 소급액 누락 ※ 관행에 따라 이전년도 집행내역에 근거 지급
	합계	12,246,667	1,800,000	

#### 바. 직계비속 변경기준 적용 오류에 따른 가족수당 미지급

담당부서는 2017.1.6. 개정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의 개정된 사항을 일부 적용하여 2018.8.9.자에 『보수규정』을 개정하면서 직계비속의 기준연령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의 직계비속과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사람’으로 변경하였다.

한편 담당부서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의 부양가족 지급대상자 적용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였는데 이는 해당규정이 2018.8.9. 개정됨에 따라 ‘19세 미만’ 여부의 적용시점은

‘2018년 12월 마지막 일자’를 기준으로 적용해야 됨을 의미한다. 즉, 직계비속의 생년월일을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 2018년 당해년의 ‘19세 미만’은 2018.12.31.자 이전까지는 19세에 도달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1999년 이후 출생자’부터 직계비속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담당부서는 2018.8.14. 공지한 안내자료 <[FAQ] 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가족수당 지원신청안내 - 2018년 가족수당 지급 관련 자주 묻는 문의사항 및 답변>에서도 직계비속을 ‘만 19세 미만자’로 정의하면서 지급대상자를 ‘2000.1.1. 이후 출생자’로 잘못 안내하였고, 2019년 직계비속도 ‘만 19세 미만’을 ‘2001.1.1. 이후 출생자’로 적용연도를 잘못 적용하였다. 더불어 실제 지급대상자는 ‘회계연도’를 지급대상자 기준으로 하면서 공지내용에서는 ‘만 나이’를 적용하는 등 직계비속의 적용대상 기준을 부적정하게 적용하고 있다.

위와 같이 지급대상자 적용기준의 혼동 및 오류로 인하여, 규정 개정 후 1999년생 직계비속을 부양하고 있던 직원들이 가족수당을 신청하였음에도 ‘나이요건 불충족’ 사유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임금협약(‘18.8.8.)에 따라 발생하는 소급분도 지급하지 않는 등 [표7]과 같이 미지급하였다.

[표 7] 직계비속 변경기준 미반영에 따른 미지급

연도	사번	성명	지급액	미지급액	내용
2018			738,000	698,000	· 둘째자녀(99년생) 일부 미지급
			972,000	698,000	· 둘째자녀(99년생) 일부 미지급
			1,220,000	220,000	· 첫째자녀(99년생) 미지급 (11개월)
			1,180,000	220,000	· 첫째자녀(99년생) 미지급 (11개월)
2019			440,000	720,000	· 둘째자녀(00년생) 미지급 (12개월)
			720,000	720,000	· 둘째자녀(00년생) 미지급 (12개월)
			-	240,000	· 첫째자녀(00년생) 미지급 (12개월)
합계			5,270,000	3,516,000	

다른 한편 담당부서는 가족수당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급여관리 업무의 효율성 및 연차휴가와 같은 다른 규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의 가족수당의 발생 및 소멸 시점으로 ‘회계연도’를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부양가족의 ‘출생 월’ 및 ‘사망 월’ 등에 따라 지급대상별로 최대 11개월분의 지급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월분까지 지급하는 방식’에 비하여 가족수당을 초과 지급하게 되어 예산이 낭비될 수 있고 지급대상자간의 형평성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 3. 관련자들 주장 및 판단

#### 가. 업무담당자 ■■■■

위 사람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본인은 2018년 8월 입사 직후 관련 업무를 인수인계 받았으나 가족수당을 포함한 급여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수당 책정 및 지급대상자 확인 과정에서 오류 등이 발생 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직원들이 제출한 신청서의 기재내용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가족수당을 책정·지급하였고, 담당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의 경우에는 부서장에게 보고 후 업무지시를 받아 최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나. 현 담당부서장 ○○○○

위 사람은 업무총괄자로서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가족수당을 포함한 급여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현 업무담당자의 노력으로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는 과정이며, 『보수규정』 과 공지사항 등 불일치하거나 오류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에 재검토하여 바로잡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전 담당부서장(%%%%부) ♣♣♣

위 사람은 감사결과에 대해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업무 당시 총괄책임자로서 규정에서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가급적이며 직원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지급기준 등을 해석하여 처리하도록 업무를 추진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 ① 가족수당 지급 규정에 따라 [별표 1]을 참고하여 초과 지급된 750,000원은 ‘회수’하고 미지급 된 7,202,667원은 조속히 ‘환급’하시기 바라며, [시정(환급/회수)]
- ② 앞으로 가족수당 지급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당을 과오 지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관련자]

- ◇ 전)%%%%부      전)부장      ♣♣♣      주의(경고)      (현 ♠♠♠♠본부 본부장)
- ◇     &&&&부      부장      ○○○      주의(경고)
- ◇     &&&&부      대리      ■■■      주의(훈계)

- ③ 한편 『보수규정』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급여, 가족수당 등이 과오지급 및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공지사항 등 관련내용을 재검토하여 오류를 수정하시고, 규정이나 지침 등 해석에 있어서 오류/이견이 발생되지 않도록 별도의 ‘해설서’, ‘지침서’ 등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 ④ 더불어 가족수당을 포함 급여 등 관리방식이 전산화 되어 있지 않아 업무담당자의 착오 등으로 부정확하게 지급되고 있으므로 담당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전산시스템’ 도입 등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별표 1]

가족수당 변동사항 반영 전후 지급내역

(단위 : 원)

사번	성명	지급사유	지급 및 회수액
		· 직계비속 변경기준 미반영 - 둘째자녀(99년생) 일부 미지급	698,000
		· 발생시점 임의 적용에 따른 가족수당 미지급 (1개월)	40,000
		· 직계비속 변경기준 미반영 - 둘째자녀(99년생) 일부 미지급	698,000
		· '18년 임금협약 소급분 - 둘째자녀 소급액 누락	320,000
		· '18년 임금협약 소급분 - 5월 소급분 계산시 착오	40,000
		· 직계비속 변경기준 미반영 - 첫째자녀(99년생) 미지급 (11개월)	220,000
		· 직계비속 변경기준 미반영 - 둘째자녀(00년생) 미지급 (12개월)	720,000
		· 직계비속 변경기준 미반영 - 둘째자녀(00년생) 미지급 (12개월)	720,000
		· 직계비속 변경기준 미반영 - 첫째자녀(00년생) 미지급 (12개월)	240,000
		· 발생시점 임의 적용에 따른 가족수당 미지급 (1개월)	26,667
		· '18년 임금협약 소급분 - 3월 소급분 계산시 착오	40,000
		· '18년 임금협약 소급분 - 기존 집행내역에 대해 소급 진행	160,000
		· '18년 임금협약 소급분 - 셋째자녀 소급액 누락	640,000
		· 발생시점 임의 적용에 따른 가족수당 일부 미지급	20,000
		· 발생시점 임의 적용에 따른 가족수당 미지급 (1개월)	140,000
		· 발생시점 임의 적용에 따른 가족수당 미지급 (1개월)	20,000
		· 모친(59년생) 미지급 (12개월)	240,000
		· 발생시점 임의 적용에 따른 가족수당 미지급 (1개월)	60,000
		· 발생시점 임의 적용에 따른 가족수당 미지급 - 둘째자녀 (1개월)	60,000
		· '18년 임금협약 소급분 - 신고서 제출일 기준에 따른 소급액누락	100,000
		· 모친(58년생) 미지급 (8개월)	160,000
		· '18년 임금협약 소급분 - 둘째자녀 소급액 누락	280,000
		· 직계비속 변경기준 미반영 - 첫째자녀(99년생) 미지급 (11개월)	220,000
		· 해외대학원 위탁교육기간 중 가족수당 지급 (8개월)	(-) 720,000
		· '18년 임금협약 소급분 - 1월 소급액 누락	20,000
		· '18년 임금협약 소급분 - 1월 소급액 누락	20,000
		· '18년 임금협약 소급분 - 기존 집행내역에 대해 소급 진행	160,000
		· 발생시점 임의 적용에 따른 가족수당 미지급 - 첫째자녀 (1개월)	20,000
		· 모친(58년생) 미지급 (8개월)	160,000
		· 발생시점 임의 적용에 따른 가족수당 미지급 (1개월)	140,000
		· '18년 임금협약 소급분 - 1월 소급액 누락	20,000
		· 모친(58년생) 미지급 (8개월)	160,000
		· 수습기간 가족수당 지급 (1개월)	(-) 30,000
		· 둘째자녀에 대한 수당계산착오 미지급	360,000
		· 모친(59년생) 미지급 (6개월)	120,000
		· 발생시점 임의 적용에 따른 가족수당 미지급 (2개월)	160,000
<b>(환급) 34건 총 7,202,667원 / (회수) 2건 총 750,000원</b>			

※ 지급금액의 (-)는 회수 금액, (+)는 환급 금액

## 증거서류 목록

처분요구안 NO.

제 목 : 임직원 급여 및 복리후생비 등 지급실태

구분	증거서류명	면수	비고
관계규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수규정	14	사본
확인서	'18년~'19년 임·직원 급여 및 복리후생비 지급 관련	6	사본
문답서	임직원 급여 및 복리후생비 등 지급 실태	7	사본
기타 증거서류	붙임1_2018년 12월 가족수당 지급내역(보안).xls	-	전자문서
	붙임2_2019년 12월 가족수당 지급내역(보안).xls	-	전자문서
	붙임1_(2018-2019) 휴직, 업무외상병 내역.xls	-	전자문서
	붙임2_(2018-2019) 퇴직발령조회.xls	-	전자문서
	붙임3_(2018-2019) 수습발령조회.xls	-	전자문서
	붙임4_(2018-2019) 징계 및 감액내역.xls	-	전자문서